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550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효승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7.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076,9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76,9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12439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 1.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1,460,112원 및 그 중 9,563,942원에 대하여는 2011.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996,638원에 대하여는 2003. 8. 1.부터 2011. 9. 29.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1. 6.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E, F, C, G, H이 있으며, C의 상속지분은 2/13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7. 2.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1. 7. 15. 접수 제1779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36915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1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1조합, 채권최고액 1,68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당시 위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800만 원이었던 사실, 2022. 4. 5.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억 2,300만 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위 2억 2,300만 원과 유사한 금액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33,076,923원[= 2억 1,500만 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억 2,300만 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0만 원) × 2/13,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74,753,597원(2022. 2. 18. 기준)이므로, 그 중 적은 금액인 위 33,076,923원을 한도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76,9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중

별지